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55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정희용 · 백종현 · 고동진
박준태 · 최수진 · 김선교
김기웅 · 김상훈 · 김성원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

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② 구인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2를”을 “제4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인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 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 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 을 다른 구직자에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u>
<u><신 설></u>	② <u>구인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채 용을 취소하여야 한다.</u>
제17조(과태료) ① <u>제4조의2를 위 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 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u>	제17조(과태료) ① <u>제4조의2제1항 을</u> ----- ----- ----- ----- ----- -----

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